

 <b>보건복지부</b>		<h1>보 도 참 고 자 료</h1>		
배 포 일	2021.07.20 / (총 51매)		담당부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팀 장	방 영 식	전화	044-202-1711
	담당자	박 영 운		044-202-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팀 장	심 은 혜	전화	044-202-1720
	담당자	한 나 영(종교시설)		044-202-1728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과 장	김 호 성	전화	044-203-4380
	담당자	김 도 회(백화점 등)		044-203-4382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관리팀	팀 장	윤 응 현	전화	02-2110-1442
	담당자	한 지 혜(방송업계)		02-2110-1291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과 장	강 지 은	전화	044-203-3231
	담당자	김 영 조(방송업계)		044-203-3239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선

- 4단계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매 가능 -
-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시설은 대면 예매 불가 -
  -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 방송업계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 ▲방송업계 방역 관리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 하였다.

## 1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선 추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서울(7개), 경기도(7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다(7.16., 7.17.).
  -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하여,
    -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기존 방역 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20명 미만)
- 정부는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하였다(7.20.~).
  -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 또한,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m<sup>2</sup>당 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한다.
    - \* 거리두기 수칙상 실내체육시설 등 면적제한 시 대부분 8m<sup>2</sup> 당 1인이나,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통상 규모가 크지 않고, 공용면적이 적은 특성 고려
- 문화체육관광부, 중수본 및 종교계는 4단계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향후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 \* 정부-종교계 코로나19 대응 실무협의회(7.19일)
- 아울러, 정부는 엄중한 수도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은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 2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관리 강화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로부터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현재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는, ‘매장 출입구’와 ‘매장 내 개별 점포 출입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은 지하철·버스·공공역사 등과 같이 유동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매장 출입 및 이동 시에 마스크를 벗지 않아 출입명부 관리는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자율시행)
    - \* 일시에 많은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경우 출입 등록과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대기줄 발생으로 밀집·밀접에 따른 거리두기 곤란, 안전사고 위험 등 우려
  - 매장 내 개별 점포를 출입할 때에는 해당 업종별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명부 작성, 인원 제한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 매장으로 출입하는 경우 발열체크를 통해 유증상자를 제한하고, 마스크를 벗는 행위와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방역수칙을 강화\* 하여 관리 중이다.
    - \* 시음·시식 및 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휴게시설 이용 금지, 22시 영업제한 등
- 그러나, 최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을 계기로 역학조사 목적의 출입명부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 정부는 현재 강남구의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관리 시범적용(현대 백화점 무역센터점)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자체·업계·중수본 등과 협의를 하여 적용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을 다음 주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 3 방송업계 방역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황희, 이하 문체부)로부터 ‘방송업계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일부 방송출연자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중단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요 방송제작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 방역 물품 지원 등 방송제작 분야의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우선 방통위와 문체부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방송제작 단계별 방역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촬영 현장에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 방역관리자 지정, 제작 현장 출입관리(발열체크 등), 스튜디오 촬영 시 주기적 환기·소독, 식사 시간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 아울러, 제작 현장에서 출연자는 촬영 전에 자가검사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가 방송하는 프로그램 출연자는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 방송제작사를 대상으로는 촬영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방역용품 등을 지원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수위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제작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와 같은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인해 방송제작 현장에서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고,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 4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7월 20일(화)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7.14.~7.20.)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9,85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407.1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1,000.1명으로 전 주(928.7명, 7.7.~7.13.)에 비해 71.4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407.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14~7.20.)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000.1명	117.3명	41.7명	51.9명	151.6명	32.7명	11.9명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3.8명	2.1명	0.8명	1.0명	1.9명	2.1명	1.8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7.19 17시 기준)	249개	53개	46개	63개	82개	16개	8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955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3261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6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7.20) 총 833만 824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0개소(서울 53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10개소)

비수도권 : 33개소(충남 10개소, 울산 5개소, 전남 4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대구 2개소, 전북 2개소, 세종 1개소, 강원 1개소, 광주 1개소, 경북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29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1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감염병전담병원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57개소 13,102병상을 확보(7.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3.9%로 4,7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1,13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4.9%로 3,90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642병상을 확보(7.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1%로 2,5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9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12병상을 확보(7.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7%로 15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06병상을 확보(7.19.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17병상, 수도권 249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3,102	4,733	7,642	2,587	412	158	806	517
수도권	11,133	3,904	3,410	691	267	78	493	249
중수본	3,088	1,383	-	-	-	-	-	-
서울	3,897	1,161	1,818	410	84	44	221	110
경기	3,513	1,221	1,209	155	160	34	201	98
인천	635	139	383	126	23	-	71	41
비수도권	1,969	829	4,232	1,896	145	80	313	268
중수본	965	347	-	-	-	-	-	-
강원	82	41	332	92	5	5	24	16
충청권	-	-	939	330	46	23	65	53
호남권	110	40	860	521	10	2	51	46
경북권	-	-	1,036	537	28	14	66	63
경남권	713	342	830	276	51	31	99	82
제주	99	59	235	140	5	5	8	8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173명의 의료 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는 지난 7월 18일(일) 종교시설 1,049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개소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점검 결과, 대부분의 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 위반한 종교시설 14개소 중 4개소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보도에 따라 19명 이하로 대면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운영 중단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 및 자율 방역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7월 19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2만 183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78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만 3057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98명 증가하였다.
- 최근 서울, 인천, 경기, 부산의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7개 분야\* 총 5,475개소 점검(7.8.~7.18.)을 실시하였다.
  - \*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숙박시설, 종교시설
  -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 70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안내·계도사항 931건을 현장에서 조치하였다.
    -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70건 중 고발 1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7건을 조치하였으며, 60건은 처분을 검토 중이다.
- 7월 19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3,792개소, ▲실내체육시설 1,16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6251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8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46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5개반, 687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2. 감염병 보도준칙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1**

**‘사적모임 제한’ 관련 Q&A (2단계~)**

**1**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  
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형종사자는 포함)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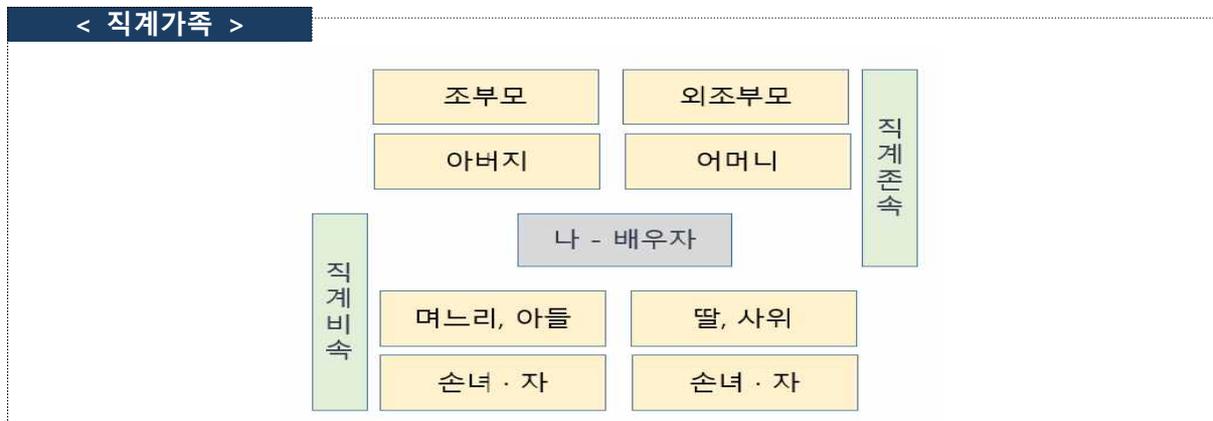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 하지 않음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 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 다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Q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 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 2 가족 모임 관련

###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 Q9.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 Q10.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요?

-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상한은 없음
-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내 산정하지 않음(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 Q11.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다만,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여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을 갖추어 돌잔치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돌잔치전문점의 경우, 1~2단계 개별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여 예외적 허용
    - \* (1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 (2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 당 1명

## 3 직장 관련

### Q12.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Q13.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됨

### Q14.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될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 Q15.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 4 다중이용시설 관련

### Q16.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사적 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적모임이 금지됨

###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 Q18.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Q20.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 Q21.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 (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 Q2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Q23. 숙박시설에서 4단계 시 사적모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 기준 초과금지 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므로 3인 이상 숙박예약 및 이용 불가
  -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가능

**Q24. 18시 이후 종료되는 영화 관람의 경우 18시 이전에는  
4인 동반입장이 가능한지?**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18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여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취지임
- 이에 따라, 사적 모임과 영화·공연, 식당·카페,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18시 이후 활동이나 프로그램 종료가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이용이 금지됨
- 영화관도 18시 이후 종료되는 경우에는 2인까지 입장이 가능함

5

## 기타

**Q23.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Q24. 스터디그룹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됨

**Q25.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임

**Q26.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27.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28. 종종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Q29.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Q30.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31.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Q32.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3.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34.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사적모임인가요?**

- 제한인원 내에서만 가능하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스포츠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 단 3~4단계에서는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Q35.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백신 접종자(1·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외,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든 모임 인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수도권 4단계 적용 시 예외 불허)
-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 집회시위의 경우, 모임행사 인원 수 산정 시 포함(1단계 500인 금지, 2단계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1인 시위 외 금지)
-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9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가 아닌 인원이 8인을 초과할 수는 없음

**Q36.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름

##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 Q2.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펍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시설, 경륜·경마·경정장, 카지노, 종교시설

#### Q3. 백신 접종자는 이용 가능 인원에 포함되나요?

-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 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실내·실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가능 인원 산정 시 제외됨 (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 1차 접종으로 접종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2

## 식당 · 카페

###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m<sup>2</sup>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Q2. 5인 이상 방문 시 식당·카페의 거리두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현행 거리두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하여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함

### Q3.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Q4.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트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운영시간 제한·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3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Q1.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1~2단계 지역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의 운영이 중단됨
- 1단계 지역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6㎡당 1명, 2~4단계 지역은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4

## 결혼식장

### Q1. 결혼식장의 이용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1단계 지역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모임인원을 웨딩홀 면적의 4m<sup>2</sup>당 1명으로 제한함
- 일시적 모임·행사 성격으로 2단계부터는 총 인원을 제한하여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3단계는 50인 미만임. 단, 이 경우에도 웨딩홀 면적의 4m<sup>2</sup>당 1명은 충족되어야 함

###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노래연습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개별 방이 아닌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 (운영시간) 1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2단계에서는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 2단계 지역에 한해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해제도 가능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시설면적(평/㎡)		30평	50평	70평	100평
		99.17㎡	165.28㎡	231.39㎡	330.57㎡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명/6㎡	17명	28명	39명	55명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손님 이용직후 손님이 이용한 마이크 등 공용물품을 소독하고 이용한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없는 경우 30분) 환기한 뒤에 재사용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2~4단계 또는 지자체별 강화) 해당 인원 수를 준수하여야 함

**Q4. 방역수칙을 게시할 때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과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모두 게시해야 하나요?**

-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 또는 방별 이용 가능 인원, 둘 중에 하나를 게시하시면 됨
  - 그러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두 가지 모두 게시하는 것을 권장

**Q5. 방 이동이 가능한가요?**

- 노래연습장에서 방 이동은 불가함

6

## 실내체육시설

### Q1.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 고강도·유산소 중심 실내체육시설은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 무술, 택견 등),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등을 말함

### Q2.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으로, 피트니스 운동, 요가,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등을 말함

### Q3.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 수칙을 적용하되, 롤러스케이트장, 빙상장, 인공암벽장, 골프연습장 등의 경우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Q4.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 \*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1단계 4㎡ 당 1명, 2~4단계는 6㎡ 당 1명

- (운영시간) 1~3단계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4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 수영장은 3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단계별 제한) 3단계부터 탁구, 배드민턴, 농구, 풋살 등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진행되는 대회와 샤워실 운영(수영장 제외)은 금지됨
- 실내풋살과 농구는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시: 풋살 15명) 초과가 금지됨
- G.X류 운동은 숨이 가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부터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과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 중저강도 운동은 3단계부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의 속도는 시속 6km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 등) 예시>

시설면적(평/m <sup>2</sup> )		50평	100평	200평	300평
		165.28m <sup>2</sup>	330.57m <sup>2</sup>	661.15m <sup>2</sup>	991.73m <sup>2</sup>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1명/6m <sup>2</sup>	28명	55명	110명	165명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5.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 시설인가요?**

- 축구, 야구 등 경기가 이루어지는 스포츠영업시설에서는 3~4단계에서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운영) 가능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대회가 금지되나, 실외 시설인 경우, 단계별 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99명까지, 3단계 49명까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전면 금지됨

**Q7.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면적당 이용 인원 산정 시 '면적'은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의 신고·허가 면적을 말함  
- 단,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함.

**Q8. 거리두기 3단계부터 실내체육 유형별 방역수칙 제한 취지**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관련 부처, 협회·단체와 협의하여 영업시설의 집합금지, 운영제한은 최소화하되, 감염 위험은 낮추기 위한 방역수칙을 설계하였음  
- 실내체육시설도 3단계부터는 집합금지·운영제한 대신, 감염위험 요인을 줄이는 수칙을 반영함

**Q9. 피트니스센터에서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안내 관련**

※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등에서 침방울 배출 위험이 큰 러닝머신 등의 속도를 제한하고,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함

**Q10.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관련**

※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 특히, 격렬한 동작이 많은 태보·에어로빅·스피닝 등 그룹운동(GX류) 유형은 침방울 배출 위험성이 크므로, 음악속도를 느리게 하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방역수칙을 규정함
  - 해당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3단계 이상 GX류 운동시 한정되며, 헬스장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
- ※ 헬스장에 들어놓는 음악 또는 이용객이 개인적으로 듣는 음악과 관계 없음

7

## 영화관·공연장 등

### Q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 Q2.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네, 식당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함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Q3.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띄어앉기 기준 적용 등

### Q4. 대규모 콘서트는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며,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단, 대중음악 공연일 경우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 기립, 합창 등) 금지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가 추가 적용됨

### Q5.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할 경우, 어떤 지침이 적용되나요?

-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면 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정규 공연장에서만 공연 가능)

### Q6. 등록공연장이 아닌 시설이나 야외에서 공연하는 경우, 공연장 방역지침 적용하는지?

- 경기장이나 야외 등 공연장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도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함

### Q7.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 Q8.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장르에 관계없이, 대중음악 공연을 포함해 모든 공연은 공연장 방역 지침을 적용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정규 공연장에서만 공연 가능)

### Q9. 동반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동반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공연장 내에서는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제한 규모'에 따라 동반자 제한 인원이 결정됨(예: 1단계 제한없음, 2단계 8인까지 가능, 3~4단계 4인까지 가능, 단 4단계에서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

### Q10. 동반자 수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 7.1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시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추가 동반자로 동석이 가능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8

##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 Q1.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이 되며, 오락실·멀티방의 경우에는 1~3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 Q2.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오락실·멀티방은 전 단계(1~4)에서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됨.

### Q3.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은 1단계 시설면적 6m<sup>2</sup> 당 1명이며 2~4단계 시설면적 8m<sup>2</sup> 당 1명임.

**Q4.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권고, ④마스크착용, ⑤음식섭취 금지, ⑥환기 및 소독하기(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⑦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⑧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등이 있음

**Q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명부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병행하여 작성하면 됨(수기출입명부 양식은 지자체에서 배포)

**Q6.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이 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좌석 한 칸 띄어 사용해야 함

**Q7.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  
- 다만, 음식물 섭취 중일 때를 제외하면 PC방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Q8.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흡연실 이용관련 내용은 강력권고 사항으로 2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강력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향후 PC방 흡연실을 통한 대규모 코로나 감염 및 전파사례, 수칙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될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의무화 조치(제재 동반)로 전환될 수 있음

### Q9.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이용자의 이용시간 제한이 있나요?

- 개편안에서는 PC방 협·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강력권고 사항으로 1인 2시간 이내 체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Q10.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PC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1~3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9

##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 Q1. 동반자 간 몇 명까지 연석 및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는 최대 연석 가능 인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다만,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석 및 스카이박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 1단계 제한 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4단계 무관중

### Q2. 일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한 아이디로 온라인 예매된 좌석이라면 일행끼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함

### Q3. 70% 이상 관중 수용 시에도 일행 외에는 띄어 앉아야 하는지?

-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모든 거리두기 단계에서 일행 간에만 붙어 앉을 수 있으며, 다른 일행끼리는 띄어 앉아야 함

### Q4. 관중석 내 취식과 육성 응원은 계속 금지되는지?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중석 내 취식 및 육성 응원이 금지됨
  - 다만, 관중석에서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으며, 관중석 외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음

**Q5.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전 예약시스템(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장예약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예약 후 현장에서 본인여부 및 코로나 증상확인 후 입장 가능

**Q6. 입장마감이 되었을 경우 예방접종자는 추가 입장이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산정 시 제외되므로 거리 두기 단계별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입장 가능

**Q7.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한가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8.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한가요?**

-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 가능

**Q9. 경마·경륜·경정장 내에서 그 밖에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응원, 소리 지르기, 침방울 튀 행동 등이 금지되며, 코로나 예방접종 후에도 마스크를 필수 착용

**Q10. 실외체육시설 이용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어떻게 산정 하나요?**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의미함.
  - 예를 들어, 풋살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5명, 총 10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10명의 1.5배인 15명임

**Q11.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는 금지됨.
  - 또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 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3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 없으며, 4단계는 22시 이후 운영 제한됨
- 1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2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3~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좌석 두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2~4단계 지역의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

-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직업훈련기관>

-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11

**목욕장업**

**Q1. 수면실 이용금지에서 수면실은 어떤 공간을 말하나요? 휴게 공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 수면실이란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말함.
- 수면을 위해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머무르는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2단계부터 수면실 이용은 금지됨
-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운영을 제한하여 위험도를 낮추고자 한 것임
- \* 휴게실은 수면실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게실 내에 별도로 구획하여 수면 용도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을 수면실로 볼 수 있음

12

## 종교시설

###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 예배(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 Q3.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
  - \* 1단계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2단계 30%(두 칸 띄우기), 3단계 20%(네 칸 띄우기), 4단계 비대면
  - \*\* 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 참여가 가능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 자제를 권고하며,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사전 승인이 필요함
-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 2단계 이후에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이 모두 금지\*됨
  - 다만, 2~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 및 기본방역 수칙 등\*을 준수하여 행사 일반 기준 규모\*\*로 실외행사가 가능함
- \* 실외행사 시 식사·숙박 금지 / 마스크 상시 착용, 큰소리로 다함께 노래하기 등 금지,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등 준수
- \*\* 2단계 100명 미만(99명까지 가능), 3단계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 Q5.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 정규종교활동 비대면운영만 허용인지?

-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4단계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되며, 법회·미사·예배 등 정규종교활동은 비대면 운영이 원칙임
- 다만, 행정법원 판결을 존중하여(7.16, 7.17),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되,
  - \*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20명 미만)
  - \*\*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m<sup>2</sup> 당 1인으로 산정

-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시설의 정규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운영 가능
-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의 현장참여는 최대 19인 이하로 가능하나, 그 외 일반 신도의 종교 활동 참여는 금지됨

\*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Q6.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두 금지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7.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 (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8.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9.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0. 1단계 종교시설 주관으로 식사·숙박이 가능한데, 종교시설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 등에서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 \*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노래하는 행위 금지 등

- 식사는 종교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
-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가급적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Q11.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2.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3.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습, 소모임 등도 금지됨
  -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Q14.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1~4단계 운영 가능

- \* 공통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 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 Q15.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시설 주관의 돌봄활동에 참여가능한 단계별 인원은?

- 감염병 유행상황과 지역 내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참조 가능

### Q16. 백신 접종을 한 경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요?

-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되며,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은 1차 이상 백신 접종자가 15명이 있는 경우 비접종자 30인을 포함하여 최대 45명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만 구성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가대·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 가능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백신 접종자와 관련한 사항(정규종교활동 참여인원 제외, 접종완료자로 성가대 및 소모임 등 구성)은 1~3단계 적용, 4단계는 적용하지 않음

**Q17. 백신 접종을 한 경우, 2~3단계 실외행사 가능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

- 접종 완료자는 종교시설 주관 2~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됨
  - \* (예시) 식사·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에서 9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  
→접종완료자가 1명 있는 경우 비접종자 99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 참여 가능

**붙임 2**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